

의안번호	2207506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3. 28.
추계번호	25A024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5조제1항)을 수립하고, ②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안 제7조제1항), ③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안 제9조 및 제10조)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억 4,400만원(연평균 4억 900만원)으로 추계
- 추계된 비용 중 국가재정 부담분은 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5년간 총 5억 5,000만원(연평균 1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지방재정 부담분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비용으로 5년간 총 14억 9,300만원(연평균 2억 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제1항)	270	—	—	270	—	540	1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제1항)	2	2	2	2	2	10	2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안 제9조 및 제10조)	747	—	—	747	—	1,493	299
합계	1,019	2	2	1,019	2	2,044	409

주: 1.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의 개선과 재정투자, 관련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안 제2조제3호): 「전기사업법」 제25조¹⁾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석탄설비를 폐지하거나 석탄발전량을 제약하는 것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안 제2조제4호):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 해당 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의무규정

1)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²⁾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제2항) 기본계획에는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실시, ②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소득지원, ③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7조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제1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으로는 ①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②노동, 지역경제 진흥, 대체산업* 육성 관련 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③노동, 지역경제 진흥, 대체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3)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 대체산업(안 제2조제7호):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진흥할 수 있는 산업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제6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기술자문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8항)	의무규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 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 (주민참여)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하여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⁴⁾ 및 제53조 ⁵⁾ 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9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⁶⁾ 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안 제10조 (환경영향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①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②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4)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예산·인력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청에 교육·홍보, 포상, 예산·인력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행정절차법」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1조 (소득지원 등)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퇴직한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7조⁷⁾에 따른 실업급여에도 불구하고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⁸⁾에 따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폐지지역에 「고용보험법」 제19조⁹⁾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12조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3조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경영자금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차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8)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9)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4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16조 (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¹⁰⁾ 각 호의 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¹¹⁾ 에 따른 수소산업을 폐지지역 대체산업으로 우선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대체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업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각 호 중 일부 생략)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8조 (국가 등의 지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¹²⁾ 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진흥,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
3	안 제6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나 시행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비 등이 발생하여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비용은 시·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현재 각 시·도가 시행계획에 담을 내용과 사업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소요 비용의 산출이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7조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	—
5	안 제8조 (주민참여)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예산이나 온라인 정책토론을 위한 운영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추진될 국민참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재원 추가 투입 계획 및 여력에 따라 재정소요가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권역별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 국민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는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국민참여 및 정책토론 관련 예산 현황
6	안 제9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안 제10조 (환경영향조사)	○	—
7	안 제11조 (소득지원 등)	×	국가가 퇴직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수준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로 인하여 퇴직할 노동자의 수와 재취업기간 등을 고려한 지급기간, 평균임금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확대될 사업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관련 조사¹³⁾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연봉을 기준으로 근무기간 및 소속회사에 따라 최소 3,153만원에서 최대 8,812만원으로 나타남

13) 주영수 외(2019),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2조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하거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사업자가 기존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종 전환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련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9	안 제13조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경영자금의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는 경우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가 수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재정부담 수준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수입 감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회수 실적 저하에 따른 국가 재정수입(기금수입) 감소 참고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중소벤처기업부는 ①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②소상공인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③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현황
10	안 제14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	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대하여 지원하는 등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제정안에 대체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만 마련되어 현 시점에서는 대체산업의 종류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지원 사업의 범위와 정부의 재원 투입 계획 또한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1	안 제16조 (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보급)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 또는 대체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안에 구체적인 감면 대상 및 감면 요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세수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에 사용되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3	안 제18조 (국가 등의 지원)	×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4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	×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사무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위임 대상 사업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①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제1항), ②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제1항), ③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5조제1항¹⁴⁾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안 제7조제1항¹⁵⁾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9조¹⁶⁾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안 제10조¹⁷⁾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해당 비용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제1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 부처가 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¹⁸⁾을

14) 안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 안 제7조(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6) 안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안 제10조(환경영향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18)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려하여 2026년부터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추계기간 동안 시행
당해 연도인 2026년과 그로부터 3년 후인 2029년에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7조제1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위원의 수는 8명, 회의 횟수는 연 1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⁹⁾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안 제7조제2항²⁰⁾에 따른 기준 정수인 25명으로 가정
- 총 25명 중 제정안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위원(당연직위원)은 안 제7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²¹⁾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²²⁾의 지방자치단체장(11명)과
노동, 지역경제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관련 3급 이상의 공무원 6명 등 총 17명으로
가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위원(위촉위원)은 위원 정수 25명에서 위 17명을
제외한 8명으로 가정

*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은 현재 폐지 및 전환 계획이 수립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7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7명)과 이를 관할하는

1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20) 안 제7조(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②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1) 안 제7조(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등) ③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
연직 위원이 된다.

1.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노동, 지역경제 진흥, 대체산업 육성 관련 경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공무원(…)
4. 노동, 지역경제 진흥, 대체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

22) 안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범위에는 발전소 설비의 폐지 외에도 석탄발전량 제약
등이 포함되나, 소관 부처의 자료 미회신으로 향후 석탄발전량이 제약될 설비의 범위를 알 수 없고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발전량 제약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추계 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이하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비용의 추계에 대하여 같음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석탄설비의 폐지 또는 석탄발전량 제약 등을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4명)로 가정²³⁾

** [참고자료 4]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 [참고자료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 3급 이상의 공무원 6명은 정부가 운영 중인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²⁴⁾”의 정부측 참석자를 참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및 지역경제정책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전환국장,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정

— 제정안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기본계획(3년 주기) 수립 시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 횟수는 연 1회로 가정

○ 위원회의 수당 지급 대상 위원 수,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9조 및 제10조)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비용으로는 이를 통합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통합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가정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는 관할 시·도지사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2~2036)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이 수립된 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군·구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영향조사의 실시 주기를 알 수 없으나,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실시 주기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하고 연구용역비는 2026년 및 2029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23) 인천광역시(시장, 옹진군수), 충청남도(도지사, 당진시장, 보령시장, 태안군수), 경상남도(도지사, 사천시장, 하동군수), 강원도(도지사, 동해시장)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안 제2조제3호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외에도 인접 지역을 포함하나, 인접 지역의 경우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24) 석탄발전 폐지 절차와 이로 인해 지역경제, 고용,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로, 정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발전5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2.21.),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에 정부·지자체·민간 머리 맞대”

- 연구용역비는 다른 시·군·구에서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제1항)

-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및 타 부처가 수행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의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국가재정으로 5억 4,000만원(연평균 1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2026년 및 2029년에 각각 2억 7,000만원으로, 총 5억 4,000만원

[표 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0	8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2020	460
평균			27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제1항)	270	-	-	270	-	540	1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제1항)

-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위촉직 위원의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가 재정으로 총 1,000만원(연평균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위촉직 위원 수(8명) × 회의 횟수(1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200만원

[표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제1항)	2	2	2	2	2	10	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안 제9조 및 제10조)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시·군·구에서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연구용역에 대한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지방재정으로 14억 9,300만원(연평균 2억 9,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건당 약 1억 700만원 × 7개 지역 × 2개 연도(2026·2029년)
= 14억 9,300만원

[표 5]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관련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남원시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전북 남원시	2017	43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질조사 및 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	강원 삼척시	2017	153
제천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충북 제천시	2018	124
평균			107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안 제9조 및 제10조)	747	—	—	747	—	1,493	2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기본계획 수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운영,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조사 비용은 유사한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국민참여 및 정책토론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5년도 예산
행정안전부	행정생산성향상지원 (일반회계, 1933-300)	-	(469)
	- 국민참여활성화 추진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홍보자료 제작 등	146
	- 국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행정제도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우수사례 공유·확산	(105)
	▶ 과제발굴 토론회 및 설명회	권역별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14
	▶ 우수사례 발굴전파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5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정보화)(일반회계, 1132-321)	-	(3,366)
	-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 ¹⁾ ’ 운영 및 기능개선 · 국민신문고 내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공공의제에 대한 국민, 공공기관 및 전문가 간 의견 교류	2,877

주: 1)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정책토론을 국민신문고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

자료: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참고자료 2]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현황

1.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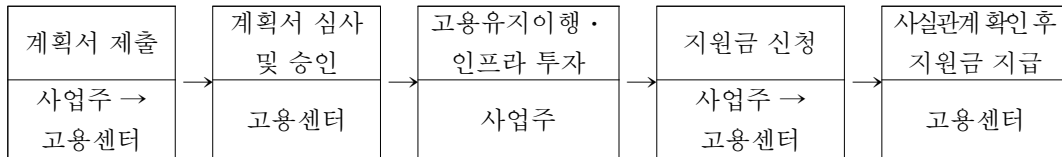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요건)** 최소 임차금액 100만원 이상,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 **(예산)** ('24년) 2,500백만원 → ('25년) 750백만원('24년 승인 기업 계속지원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비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억원 한도 사업주 투자의 50%, 1년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센터에서 제출하여 승인받은 계획서에 따라 사업주가 인프라 투자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2.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사업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직무 재배치 등을 위해 재배치(전환) 훈련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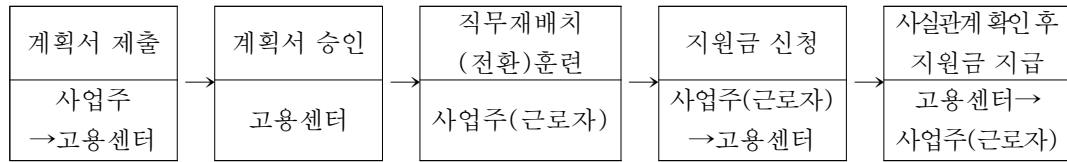
-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지원요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계획 수립 후 직무를 변경하여 재배치 예정인 근로자에게 직무훈련을 제공하거나 이·전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원
- **(예산)** ('24년) 3,742백만원 → ('25년) 3,742백만원
 - 훈련비: 1,862백만원('25년 신규 660명×2.1백만원+'24년 계속 476백만원)
 - 훈련장려금: 1,680백만원(560명×2백만원×1.5개월)
 - 운영비: 200백만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 훈련비용 실비지원(인당 최대 300만원 내 12개월 한도), 사업주 훈련장려금[월 최대 200만원(인당 1일 10만원), 총 600만원 내 12개월 한도]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직무전환 훈련 등을 이행한 후 지원금 신청·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3] 중소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현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 (개요) 정상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진공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여 채무부담 경감 ○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이면서, 다중채무자(2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 전기 대비 매출액 감소, 중·저신용(NCB 839 이하), 소진공 부실징후 업체 중 1개 이상 요건 해당 ○ (지원실적) 2024년 5,188억원, 20,550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시상환유예	
○ (개요) 폐업하여 소상공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기존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토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면서 폐업하여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한 소상공인 ○ (지원실적) 2024년 5,851억원, 84,155건	
□ 소상공인 대환대출	
○ (개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 (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보유대출) 2024.7.3.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 (지원실적) 2024년 2,491억원, 9,762건	

자료: 중소기업부

[참고자료 4]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단위: 용량(MW), 발전량(GWh)]

발전소명(지역)	대수	용량	호기	용량	준공	호기	용량	준공	발전량('23)
삼천포화력(경남)	4	2,120	#3	560	'93	#5	500	'97	11,278
			#4	560	'94	#6	500	'98	
영흥화력(인천)	6	5,080	#1	800	'04	#4	870	'08	22,174
			#2	800	'04	#5	870	'14	
			#3	870	'08	#6	870	'14	
여수화력(전남)	2	669	#1	340	'16	#2	329	'11	3,193
보령화력(충남)	6	3,050	#3	550	'93	#6	500	'94	15,990
			#4	500	'93	#7	500	'08	
			#5	500	'93	#8	500	'08	
신보령화력(충남)	2	2,038	#1	1,019	'17	#2	1,019	'17	11,704
태안화력(충남)	10	6,100	#1	500	'95	#6	500	'02	28,163
			#2	500	'95	#7	500	'07	
			#3	500	'97	#8	500	'07	
			#4	500	'97	#9	1,050	'16	
			#5	500	'01	#10	1,050	'17	
하동화력(경남)	8	4,000	#1	500	'97	#5	500	'00	16,889
			#2	500	'97	#6	500	'01	
			#3	500	'98	#7	500	'05	
			#4	500	'99	#8	500	'05	
삼척그린화력(강원)	2	2,044	#1	1,022	'16	#2	1,022	'17	8,867
당진화력(충남)	10	6,040	#1	500	'99	#6	500	'06	27,197
			#2	500	'99	#7	500	'07	
			#3	500	'00	#8	500	'07	
			#4	500	'01	#9	1,020	'16	
			#5	500	'05	#10	1,020	'16	
북평화력(강원)	2	1,190	#1	595	'17	#2	595	'17	6,067
고성(경남)	2	2,080	#1	1,040	'21	#2	1,040	'21	12,247
신서천(충남)	1	1,018	#1	1,018	'21				3,523
강릉안인(강원)	2	2,080	#1	1,040	'22	#2	1,040	'23	9,985
반월열병합*(경기)	1	83	#1	83	'90				368
대구염색열병합*(대구)	1	73	#1	73	'04				0.7
SGC에너지*(전북)	1	114	#1	114	'08				1,962
새만금열병합*(전북)	2	303	#1	152	'15	#2	152	'15	2,376
금호여수열병합*(전남)	2	264	#1	119	'09	#2	145	'16	1,661
여수열병합*(전남)	1	48	#1	48	'10				358
구미열병합*(경북)	1	97	#1	97	'91				535
부산염색열병합*(부산)	1	19	#1	19	'93				16
김천열병합*(경북)	1	59	#1	59	'13				393
전북집단지너지*(전북)	1	19	#1	21	'92				106
상공에너지*(전북)	1	10	#1	10	'12				40
포천그린에너지*(경기)	1	170	#1	170	'18				1,338
동해화력(무)(강원)	2	400	#1	200	'98	#2	200	'99	1,876
삼척화력(강원)	1	1,050	#1	1,050	'24				-

주: *는 비중양급전(14대/1,259.2MW), (무)는 무연탄(2대/400M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전환 계획

(단위: MW)

연도	전환 계획			
	발전설비	내용	이전 지역	설비용량
2025	태안#1	LNG 전환	구미	500
	태안#2	LNG 전환	여수	500
2026	하동#1	LNG 전환	안동	500
	보령#5	LNG 전환	보령	500
	보령#6	LNG 전환	함안	500
	삼천포#3,4	LNG 전환	(미정)	1,120
2027	하동#2,3	LNG 전환	하동	1,000
	삼천포#5	LNG 전환	(미정)	500
2028	하동#4	LNG 전환	하동	500
	삼천포#6	LNG 전환	(미정)	500
	태안#3	LNG 전환	공주	400
2029	동해#1,2	LNG 전환	미정	400
	당진#1,2	LNG 전환	(호남)	1,000
	태안#4	LNG 전환	(미정)	500
2030	당진#3,4	LNG 전환	용인	1,000
2031	하동#5,6	LNG 전환	용인	1,000
2032	태안#5,6	LNG 전환	용인	1,000
2033	—	—	—	—
2034	영흥#1,2	LNG 전환	(미정)	1,600
2035	—	—	—	—
2036	당진#5,6	LNG 전환	(미정)	1,000

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²⁵⁾ 및 첨단산업 전력공급계획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5) 2025.2.2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자료 미회신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같음함